

#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이신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11월 16일  
발 의 자 : 이신혜, 유광상, 김영한  
유 용, 신원철, 이윤희  
허기희, 김진철, 한명희  
최용식, 문형주, 김창원  
황준환, 장인홍, 강성언  
김혜련, 전철수, 장우윤  
김인제, 김문수, 김광수(도봉)  
의원(21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공공기관 공문서의 한글 사용 및 광고물의 한글 표기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, 공공기관에서 외국 문자 표기를 쓰거나 외래어·외국어를 남발하고 있어 외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서울시 및 직속기관, 사업소, 투자·출연기관 등의 국어 한글 사용 실태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서울시 공공기관의 외국글자 표기 사용을 줄이는 데 내실을 기하며,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어 사용 촉진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향상시키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매년 실시하는 공문서 등의 국어 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의 결과 및 5년마다 실시하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(안 제16조제4항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기 타 :
  - 1) 신·구조문대비표
  - 2)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(별첨)

##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실태 조사 및 평가) ① ~ ③ (생략) <신설>	제16조(실태 조사 및 평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